

평생교육 현장실습 안내

1. 교육실습의 의의 및 목적

1) 교육실습의 의의

실습기관은 필요한 자원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기초가 된다.

실습생은 평생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시험해 보는 기회가 되며, 이미 습득한 평생교육 이론을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하거나 실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.

2) 교육실습의 목적

강의시간이나 책을 통해 익힌 교육지식과 이론을 직접 적용해본다.

평생교육사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나 대인관계의 기술들을 체험해보게 한다.

평생교육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식하게 한다.

단편적으로 익힌 지식과 기술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교육활동 전반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.

평생교육사로서의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.

2. 실습 신청 및 절차

실습하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사전승인을 받고 나면 아래의 절차로 신청서 제출

- 1) 평생교육실습기관선정
- 2) 평생교육실습 신청서 제출
- 3) 기관으로 공문발송
- 4) 실습시작 및 실습일지 작성
- 5) 실습종료 및 평생교육실습 일지 및 각종 평가서 제출

☞ 양식 다운로드: [로그인→해당 교과목 온라인강의실→자료실]

- 실습신청서, 실습생 신상서, 서약서를 작성하고 첨부자료를 포함하여 학교에 제출.

- 실습일지 양식 및 기타 양식 또한 과목 공지사항 내용 숙지 후 지시에 따라 제출

※ 실습일지는 반드시 스프링 제본한 후 등기 또는 방문으로 제출함.

3. 교과목 이수요건

현장실습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실습과목 수강.

- 대학 및 기관 :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

※ 시간제등록 운영 대학, 학점은행기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포함한다.

☞ 선수과목(재학생 입학년도)

~ 2008년: 평생교육개론, 성인학습 및 상담평생교육방법론

2009년 ~ 2010년: 평생교육론, 평생교육방법론

2011년 ~ : 평생교육론, 평생교육방법론, 평생교육경영론,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

○ (현장실습 이수요건)

-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.
-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의 성적 산출 및 학점 부여 이전에 종료하여야 한다.

4. 주의사항

- 온라인 출석: 콘텐츠를 반드시 수강해야 함. 1/4선 이상 결석 시 출석 미달로 무조건 F 처리
(*** 강의 미수강으로 인한 출석미달에 대한 규정은 일반과목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니 주의를 요합니다.)
- 기관평가 점수: 비교적 개인별 차이가 크지 않음
- 일지 평가 점수: 일지 작성요건, 양식, 다양한 자료, 성실한 기록 등을 기준으로 평가
- 실습이 종료되었더라도 정규학기 기간 내내 공지사항(과목공지, 평가기준 및 기타 공지)을 반드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
- 자유게시판이나 토론방을 통해 실습학생들 간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 교환 등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가지도록 함

*** 2015학년도 개정 규정

1) 실습지도자 자격

-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지도·관리하는 실습지도자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여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한다.
 -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
 -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(**2년)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
 -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(**3년)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

2) 출석수업 규정

- 실습오리엔테이션 : 실습의 목적, 실습 진행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수강생 전원 출석수업(1회) 실시
- 실습세미나(권장) : 실습의 목적, 실습기관 유형별 특성 및 유의사항, 실습일지 작성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출석수업 실시
- 실습최종평가회(권장) : 실습결과 보고 및 평가 등으로 구성하여 실시

3) 근무지 실습 가능: 업무와 실습 업무 구분

5. 현장실습 운영기준

- 현장실습은 최소 4주간(최소 20일, 총 160시간) 이상 실시.
- 현장실습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, 1일 8시간(9:00~18:00), 주 5회(월~금)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.
 - ※ 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
- 다만,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(직장인 등)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.

6. 현장실습 인정범위

- 근무지(재직기관) 실습: 현장실습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실습을 실시하여야 함.
-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음
 - 직장(현장)체험/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(단기근로자 형태)을 수행하는 경우
 - 외국 소재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
 -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중복하는 경우
 -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
- 동일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여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은 가능한 5명의 범위 내에서 지도·관리
-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이 제출한 실습일지를 검토하고, 주 1회(1주: 40시간), 총 4회에 걸쳐 실습생의 실습수행에 대한 의견을 실습지도 기록서에 기록

※ 문의전화: 평생교육학전공 051) 320-2843